



제1748호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호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1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호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2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호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2
○ 의회사무국공고 제 6 호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1
○ 의회사무국공고 제 7 호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9
○ 의회사무국공고 제 8 호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8
○ 의회사무국공고 제 9 호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7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0 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8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2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2022년 10월 중 남동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구 수정(제명) 및 관계 법령 정비(안 제3조)
- 총무위원회 소관 남동문화재단 사무 신설(안 제6조)
-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남동문화재단의 임원 신설(안 제4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은아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3
----------	------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육은아의원

찬 성 자 : 장덕수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2022년 10월 중 남동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구 수정(제명) 및 관계 법령 정비(안 제3조)
- 총무위원회 소관 남동문화재단 사무 신설(안 제6조)
-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남동문화재단의 임원 신설 (안 제4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제51조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의회의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남동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남동문화재단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의회의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집회) ①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그날에 부득이한 이유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총무위원회

가. ~ 다. (생략)

<신설>

라. (생략)

3. (생략)

제40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① ② (생략)

<신설>

제3조(집회) ① 법 제53조-----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남동문화재단 사무에 속하

는 사항

마. (현행 라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40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남동문

화재단의 임원을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임 문 진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3장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7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남동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임원)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내부규정)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내부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3호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터넷시스템 점검 및 홈페이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수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8조제1항)
「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홈페이지의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4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유경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인터넷시스템 점검 및 홈페이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수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8조제1항)
「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홈페이지의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전자정부법」 제4조, 제5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의 폐기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7. (생략)	제2조(용어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 ----- -----.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 -----. 6. 7. (현행과 같음)
제3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제3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삭제>

제8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의 폐기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제9조 (생략)

제10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생략)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1조 ~ 제14조 (생략)

제15조(시스템의 보안)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6조 (생략)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7조(시스템의 보안) ① -----
-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2조, 제8조, 제12조는 근거 법령의 수정이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7조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음

작성자 : 홍보실장 이 현 구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호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안 제3조)
- 교육 및 홍보 (안 제4조)
- 재정지원 (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25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유경.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1명

☐ 제안이유

-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안 제3조)
- 교육 및 홍보 (안 제4조)
- 재정지원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관련 조례 현황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화재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교육 및 홍보), 제5조(재정지원) 규정에 따른 방연마스크 등 지원 시 재정 소요 예상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1) 누구나 쉽게 착용이 가능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시간내 긴급 대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단가가 저렴한 방연마스크(습식형) 지원과 화재에 취약한 대상부터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2) 지원 가능 시설 중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지원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3) 1차년도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 보육시설, 3차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4) 분실이나 신규 종사자 및 이용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은 해당 시설 자체 사업비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함.
- 5) 방연마스크(습식형)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여 3차에 걸쳐 시설별 지원하고, 유효기간 경과 주기 반영을 전제로 추계함.

***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22.12.31.기준)

구 분	계	보육시설	노인복지 시 설	장 애 인 복지시설	아 동 복지시설
시 설 수	912	271	571	25	45
종사자 및 이용자수	57,094	12,701	41,419	1,717	1,257

나. 추계 결과

(1차년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2,974\text{명} \times 13,000\text{원} = 38,662\text{천원}$

(2차년도) 보육시설 : $12,701\text{명} \times 13,000\text{원} = 165,113\text{천원}$

(3차년도) 노인복지시설 : $41,419\text{명} \times 13,000\text{원} = 538,447\text{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방연마스크(습식형)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비 부담이 큼.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38,662	165,113	538,447			742,222
방역마스크 지원		38,662	165,113	538,447			742,222
재원 조달							
의 재 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 체 수 입	소 계	38,662	165,113	538,447			742,222
	지방세	38,662	165,113	538,447			742,22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관련 지자체 조례현황

○ 총74개 : 광역 6, 기초 68

구분	지자체명	
광역 (6)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68)	인천(4)	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원(1)	동해시
	경기(15)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경남(1)	김해시
	경북(1)	군위군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7)	남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3)	대덕구, 서구, 유성구
	부산(1)	동래구
	서울(13)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울산(3)	남구, 북구, 중구
	전남(6)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영암군, 완도군, 함평군
	전북(3)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충남(3)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
	충북(2)	제천시, 충주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호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2조 ~ 제3조)
-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증빙서류의 제출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 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2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철상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2조 ~ 제3조)
-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증빙서류의 제출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제46조 제2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남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 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 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6호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거리공연 관리 (안 제8조)
- 사업의 위탁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6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이연주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거리공연 관리 (안 제8조)
- 사업의 위탁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및 「예술인 복지법」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남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마술, 미술, 전시 등의 모든 예술 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육성
2.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관리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 및 무대 장소 등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권고적 내용의 의안이며, 거리공연가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지원에 대한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이 아님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7호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경계선 지능에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27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박정하,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경계선 지능에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제1조,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남동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6조(지원사업)
- 제7조(위탁 등)
- 제9조(공동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6조(지원사업), 제9조(공동사업 추진)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제7조(위탁 등)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 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8호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지원 사업 (안 제5조)
- 재정 지원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전유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8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전유형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지원 사업 (안 제5조)
- 재정 지원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9조, 제63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서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자료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9호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9
----------	------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 미 라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약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10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
-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안 제4조~제12조)
- 녹색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안 제13조~제14조)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안 제15조)

-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안 제16조)
- 구의회 보고(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 ~ 2.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육은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31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발 의 자 : 육은아·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
-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안 제4조~제12조)
- 녹색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안 제13조~제14조)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안 제15조)
-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안 제16조)
- 구의회 보고(안 제1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조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남동구는(이하 “구”라 한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3.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④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8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2조(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제4조(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1억 5천만원 미만의 한시적 경비로 예상되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지지체 의무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등을 구체화 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신 현 천

[참고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

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